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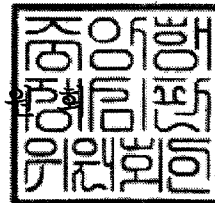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송 달 서

① 사 건	2015167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② 청 구 인	참여연대(대표자 정현백)	③ 피 청 구 인	인사혁신처장
④ 송 달 서 류	답변서 부분, 증거자료 일체		
⑤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위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5. 10. 21.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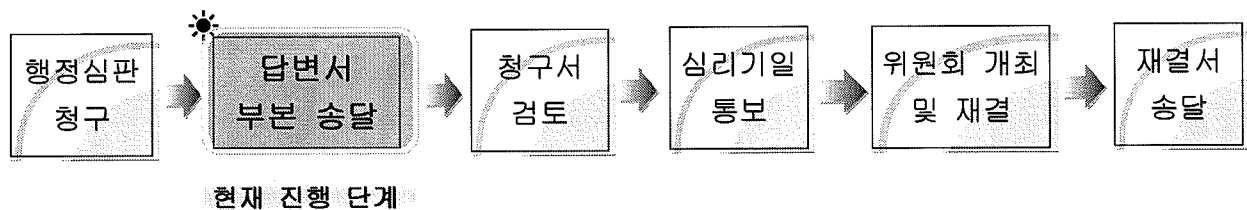


참여연대(대표자 정현백) 귀하

안 내 문

1. 이 '답변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의견내용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재결서'로 통보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아래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참고로, 답변서 부분은 귀하의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 2부(정본, 부분)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우리 위원회로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http://www.simpan.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기일 통지 등의 사유로 보충서면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기일 연기(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 및 각종 서류 제출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http://www.simpan.go.kr>)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center.simpan.go.kr>)에서 '나의 사건조회', '행정심판관련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10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성 명 참여연대(대표자 정현백)

주 소 110-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피 청 구 인 인사혁신처장

(처분청)

심 판 청 구 일 2015-09-04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7. 피청구인에게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퇴직 전 5년 이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 5를 근거로 부분공개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19조의3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의5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3.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5. 7.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27.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에서 취업심사 결과와 공개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는 공개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비공개 항목으로 결정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라는 점, ③ 취업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보를 종합하면 충분히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 전 1년 이내의 소속부서 및 직위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의 주장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가 원칙인 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와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피청구인의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가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 기본적으로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공감하는 바이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정보공개와

같은 가치와 비중으로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개인의 정보보호도 정보를 공개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 못지않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¹⁾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에서는 법 제19조의3제1항²⁾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②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③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④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규정된 항목 외의 정보공개여부는 위 시행령 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1)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는 생략

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 업무취급승인 심사, 업무내역서 심사 등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4조 제1항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타법에 명시된 경우 그 특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5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와 관련한 시행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3)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있는 바,

본 사건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에 대한 정보가 비록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이 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라. 피청구인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피청구인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해 왔으며, 올해 역시 특별한 비공개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청구인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조항(법제 35조의5)을 신설하였는바,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의 청구가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요청한 정보의 미공개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자료제출 시까지는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후 법 개정 등으로 취업심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 자료에 명시된 대상자들에 대한 극히 개인정보인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커서 비공개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6. 결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청구된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비밀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4조제1항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인사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심의시 확인한 내용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서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인사처 정보공개심의회)

2015. 10. 13.

피청구인 : 인사혁신처장

담당자 : 위상환, 최서은

연락처 : (02) 2100-66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인사처 정보공개심의회)

□ 청구정보

- 2014.6.1.~2015.5.31. 기간동안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취업승인, 임의취업자 심사 현황

* 양식

· 퇴직당시 소속기관 / 퇴직당시 직위(직급) / 업무연관성 심사대상(부서/기관) /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 퇴직일 / 취업예정업체 / 취업예정직위 / 취업예정일 / 심사일자 / 심사결과(취업가능/취업제한)

- 청구양식 중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에서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공개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비공개 항목으로 결정된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 취업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보를 종합하면 충분히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아울러, 동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퇴직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를 공개할 경우 다른 공개 항목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대부분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원치 않아 비공개 요청함

※ 제3자(14.6.1~15.5.31. 취업심사대상자)의 의견청취 실시(2015.8.11.~8.18.)(붙임 3)

○ 더불어,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06년부터 작년까지 이 같은 정보를 계속 공개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보공개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지난 06년부터 작년 자료제출 시기까지는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후 시행령개정 등으로 취업심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 자료제출 대상자들은 현재 취업중인 자들로 극히 개인정보인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